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5. 8. 1 조례 제1948호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

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의 주관자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일반석에서 관람을 원하는 경우 좌석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

제8조(시비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

제9조(민간 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3.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